

---

2020년 면 정기 종합감사  
처 분 요 구 서

---



## 처분요구 목록

| 연번 | 소관부서 | 시<br>년<br>행<br>도 | 제 목                    | 행정상<br>조<br>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br>조<br>치 |
|----|------|------------------|------------------------|---------------|-------|-----------|---------------|
|    |      |                  |                        |               | 내역    | 금액(원)     |               |
|    | 합계   | 12건              |                        | 시정6<br>주의6    | 6건    | 2,270,310 |               |
| 1  | □□면  | 2017~<br>2019    |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주의            |       |           |               |
| 2  | □□면  | 2017~<br>2018    |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 시정            | 환수    | 806,000   | 주의            |
| 3  | □□면  | 2019~<br>2020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업무 부적정      | 주의            |       |           |               |
| 4  | □□면  | 2019             |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시정            | 환수    | 214,000   |               |
| 5  | ○○면  | 2017~<br>2020    |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 시정            | 세입    | 725,630   | 주의            |
| 6  | ○○면  | 2017~<br>2020    | 월액여비 지출증빙 소홀           | 주의            |       |           |               |
| 7  | ○○면  | 2017             |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주의            |       |           |               |
| 8  | ○○면  | 2019             |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시정            | 환수    | 288,000   |               |
| 9  | ◇◇면  | 2017<br>~2020    |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 시정            | 세입    | 9,680     | 주의            |
| 10 | ◇◇면  | 2017<br>~2019    | 시설공사 준공검사(감독) 업무 추진 소홀 | 주의            |       |           |               |
| 11 | ◇◇면  | 2019<br>~2020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업무 부적정      | 주의            |       |           |               |
| 12 | ◇◇면  | 2018             |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시정            | 환수    | 227,000   |               |

【일련번호: 1】

# 정 선 군

## 주의

【제 목】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소관기관】 □□면

【조치기관】 □□면

【조치사항】 주의

【내 용】

### 1. 현황

○ 인접시군 4개면 친선체육대회 지출 내역

| 담당부서 | 내 용    | 지출과목    | 지출연도 | 지출금액(원)   | 적정과목  |
|------|--------|---------|------|-----------|-------|
| 총무   | 버스임차   | 행사실비보상금 | 2017 | 450,000   | 사무관리비 |
| “    | 기념품구입  | 행사운영비   | 2018 | 4,000,000 | 업무추진비 |
| “    | 시상품 구입 | 행사운영비   | 2018 | 160,000   | 업무추진비 |
| “    | 버스임차   | 행사운영비   | 2019 | 400,000   | 사무관리비 |

○ 자매결연기관 교류협력사업 지출 내역

| 담당부서 | 내용   | 지출과목    | 지출일자 | 지출금액(원) | 적정과목  |
|------|------|---------|------|---------|-------|
| 총무   | 버스임차 | 행사실비보상금 | 2018 | 750,000 | 사무관리비 |
| “    | 버스임차 | 행사실비보상금 | 2019 | 550,000 | 사무관리비 |

### 2. 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의 일반수용비와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

로 규정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20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명칭 변경)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하며(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 원칙)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로 되어있다.

또한, 사무관리비(201-01)는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 □□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인접시군 4개면 친선체육대회 행사를 주관하면서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해야 할 기념품 및 시상품 구입을 행사운영비로 지출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야 할 버스임차료를 행사실비보상금 및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여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면장은

[주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 정 선 군 시정

【제 목】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소관기관】 □□면

【조치기관】 □□면

【조치사항】 회수 806,000원

【내 용】

### 1. 현황

○ 이장수련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내역

(단위:원)

| 담당부서 | 연도   | 수련회 장소 | 대상인원 | 지출금액      | 실비정산 후  | 반납액     | 비고 |
|------|------|--------|------|-----------|---------|---------|----|
|      |      | 합 계    |      | 1,300,000 | 494,000 | 806,000 |    |
| 총무   | 2017 | 관내     | 13명  | 650,000   | 247,000 | 403,000 |    |
| “    | 2018 | 관내     | 13명  | 650,000   | 247,000 | 403,000 |    |

○ 행사실비보상금 정산 세부내역

- 식 비 : 8,000원×2회×13명 = 104,000원
- 간식비 : 3,000원×1회×13명 = 39,000원
- 교통비 : 해당없음 (관내 행사 시 교통비 없음)

### 2. 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20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명칭 변경)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하며(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 원칙)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일비는 지급하지 않음)”로 되어있다.

또한,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하고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하되, 국내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과 2018년 이장 수련회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급량비 및 교통비에 대한 실비 산출내역을 작성하지 않았고,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석자 확인 대장 등)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이 예산액에 맞춰 지출하여 806,000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 조치할 사항

□□면장은

[시정] 2017년 및 2018년 이장수련회 참가자에게 과다지급된 행사실비보상금 806,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고,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지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 정 선 군 주의

【제 목】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업무 부적정

【소관기관】 □□면

【조치기관】 □□면

【조치사항】 주의

【내 용】

### 1. 현 황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처리현황(2019~2020년도)

(단위: 가구,건)

| 신청대상자 |          |        | 민원대행 실적 |       |      |      | 비 고 |
|-------|----------|--------|---------|-------|------|------|-----|
| 계     | 사회보장급여신청 | 장애인 등록 | 계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전화요금 |     |
| 60    | 49       | 11     | 52      | 5     | 12   | 35   |     |

### 2.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해당 기관(한전, KT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종 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읍면장은 사회 보장급여 신청서 접수를 받을 때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서”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하여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면에서 2019년도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대상 60가구 중 39가구대하여 요금감면 민원 대행을 추진 하였으나, 21가구에 대한 민원대행 실적이 없어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할 사항

□□면장은

[주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접수 및 장애인 등록신청 접수시에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신청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4 ]

# 정 선 군

## 시정

【제 목】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면

【조치기관】 □□면

【조치사항】 회수 214,000원

【내 용】

### 1. 현 황

[표] 공사 현황

| 사 업 명                        | 계약금액<br>(천원) | 공사기간                           | 계약자     | 사 업 량                    | 비고 |
|------------------------------|--------------|--------------------------------|---------|--------------------------|----|
| 2019년 □□리<br>⊕⊕ 마을안길<br>보수공사 | 14,792       | ‘19.11.08.<br>~<br>’19.11.29.. | ◎◎건설(주) | - L형측구 108m<br>- 다이크 40m |    |

### 2. 내 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97호)』 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9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

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면에서는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확인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현장조건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214천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사추진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리

## 조치할 사항

□□면장은

[시정] ‘2019년 □□리 ㉠㉠ 마을안길 보수공사’에 과다 지출된 금214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5 ]

# 정 선 군

## 시정

【제 목】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면

【조치기관】 ○○면

【조치사항】 세입 725,630원

【내 용】

### 1. 현 황

○ 신용카드 포인트 발생액: 금725,630원

(단위:원)

| 카드종류        | 연 도                     | 포인트발생액<br>(세입금액) | 비고 |
|-------------|-------------------------|------------------|----|
|             |                         | 725,630          |    |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 2016. 2월 ~ 2020. 2월말 기준 | 630,180          |    |
| 신용카드 캐시백    | 2014. 2월 ~ 2020. 2월말 기준 | 95,450           |    |

○ 신용카드 발급대장 : 없음

○ 신용카드 연체료 발생액: 금4,713원

(단위:원)

| 연체료 발생일    | 연체이자  | 비고 |
|------------|-------|----|
| 합계         | 4,713 |    |
| 2017.05.30 | 220   |    |
| 2017.06.28 | 562   |    |
| 2017.07.13 | 875   |    |
| 2017.09.28 | 67    |    |
| 2018.03.13 | 128   |    |
| 2018.05.29 | 37    |    |
| 2018.09.13 | 137   |    |
| 2019.01.29 | 195   |    |
| 2019.03.13 | 1     |    |
| 2019.07.13 | 1,387 |    |
| 2019.11.28 | 1,104 |    |

○ 신용카드 사용 후 미입금액 : 금815,210원

(단위:원)

| 내용        | 사용시기         | 지출액<br>(미입금액) | 비고 |
|-----------|--------------|---------------|----|
| 합계        |              | 815,210       |    |
| **** 급식제공 | 2019.10.6.   | 480,000       |    |
| 미상        | 2017.4.3. 이전 | 335,210       |    |

## 2. 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V장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1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고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 신용카드 사용시 의사결정(품의) ⇒ 신용카드 사용(원인행위) ⇒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 계좌 입금(지출)의 회계처리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다.
- 하지만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및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적립금725,630원을 세입처리 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결제일 전 계좌 입금 일부 미처리(2건, 815,210원)로 인해 4,713원의 연체이자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①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적립금 725,630원을 세입조치하시고, ②신용카드 사용 미입금액(815,210원) 및 연체이자(4,713원)을 카드사용통장에 입금하여 더 이상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6 ]

# 정 선 군

## 주의

【제 목】 월액여비 지출증빙 소홀

【소관기관】 ○○면

【조치기관】 ○○면

【조치사항】 주의

【내 용】

### 1. 현 황

○ 월액여비 지출현황

(단위:원)

| 연도   | 적요                   | 지급일자       | 비고 |
|------|----------------------|------------|----|
| 2017 | 2017년 2월 월액여비 지급     | 2017-03-02 |    |
|      | 2017년 3월 월액여비 지급     | 2017-03-31 |    |
|      | 2017년 4월 월액여비 지급     | 2017-04-28 |    |
|      | 2017년 5월 월액여비 지급     | 2017-05-31 |    |
|      | 2017년 6월 월액여비 지급     | 2017-07-05 |    |
|      | 2017년 7월 월액여비 지급     | 2017-08-08 |    |
|      | 2017년 8월 월액여비 지급     | 2017-09-01 |    |
|      | 2017년 9월 월액여비 지급     | 2017-10-11 |    |
|      | 2017년 10월 월액여비 지급    | 2017-11-02 |    |
|      | 2017년 11월 월액여비 지급    | 2017-12-04 |    |
|      | 2017년 12월 월액여비 지급    | 2017-12-28 |    |
| 2018 | 2018년 1월 월액여비 지급     | 2018-01-31 |    |
|      | 2018년 1월 월액여비(추가) 지급 | 2018-02-01 |    |
|      | 2018년 2월 월액여비 지급     | 2018-02-28 |    |
|      | 2018년 3월 월액여비        | 2018-04-04 |    |
|      | 2018년 4월 월액여비 지급     | 2018-05-02 |    |
|      | 2018년 5월 월액여비 지급     | 2018-06-01 |    |
|      | 2018년 6월 월액여비 지급     | 2018-07-02 |    |
|      | 2018년 7월 월액여비 지급     | 2018-08-01 |    |
|      | 2018년 8월 월액여비 지급     | 2018-08-30 |    |
|      | 2018년 9월 월액여비 지급     | 2018-10-01 |    |
|      | 2018년 10월 월액여비 지급    | 2018-10-31 |    |
|      | 2018년 11월 월액여비 지급    | 2018-12-03 |    |

|      |                   |            |  |
|------|-------------------|------------|--|
|      | 2018년 12월 월액여비 지급 | 2018-12-31 |  |
| 2019 | 2019년 1월 월액여비 지급  | 2019-02-01 |  |
|      | 2019년 2월 월액여비 지급  | 2019-03-04 |  |
|      | 2019년 3월 월액여비 지급  | 2019-04-10 |  |
|      | 2019년 4월 월액여비 지급  | 2019-05-17 |  |
|      | 2019년 5월 월액여비 지급  | 2019-06-04 |  |
|      | 2019년 6월 월액여비 지급  | 2019-07-10 |  |
|      | 2019년 7월 월액여비 지급  | 2019-08-08 |  |
|      | 2019년 8월 월액여비 지급  | 2019-09-03 |  |
|      | 2019년 9월 월액여비 지급  | 2019-10-14 |  |
|      | 2019년 10월 월액여비 지급 | 2019-11-11 |  |
|      | 2019년 11월 월액여비 지급 | 2019-12-02 |  |
|      | 2019년 12월 월액여비 지급 | 2019-12-30 |  |
| 2020 | 2020년 1월 월액여비 지급  | 2020-02-04 |  |

## 2.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제1항에 따르면 “지급명령을 발하러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하며,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일상경비, 직무수행경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의정활동비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제54조제3항에는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해야 하며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3항에는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하지만 ○○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37회의 월액여비를 지출하면서 채권자의 청구서(영수인 미첨부)를 받지 않았으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남면장은

[주의] 월액여비 지출 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청구서(영수인)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지출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7 ]

# 정 선 군

## 주의

【제 목】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면

【조치기관】 ○○면

【조치사항】 주의

【내 용】

### 1. 현 황

[단위:천원]

| 사 업 명                 | 계약<br>금액 | 공사기간<br>(계약,착공,준공)                     | 계약자    | 주업종<br>(사업량) | 보유면허         | 비고                                  |
|-----------------------|----------|----------------------------------------|--------|--------------|--------------|-------------------------------------|
| ### 축제장 전기시설 설치공사     | 3,840    | '17.09.13.<br>'17.09.13.<br>'17.09.19. | **전기   | 전기공사업        | 없음<br>(도소매업) | 업종별<br>업무<br>내용과<br>상이한<br>계약<br>추진 |
| @@3리 인도교 가로등 설치공사(2차) | 11,870   | '17.11.15.<br>'17.11.15.<br>'17.12.13. | ****통신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

### 2. 내 용

○ 「전기공사업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니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1. 꽃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꽃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전기공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 조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에서는 상기 “1 현황”과 같이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와 계약 하는 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장은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8 ]

정 선 군  
시정

【제 목】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면  
【조치기관】 ○○면  
【조치사항】 회수 288,000원  
【내 용】

1. 현 황

[표] 공사 현황

| 사 업 명                | 계약금액<br>(천원) | 공사기간                          | 계약자  | 사 업 량                                         | 비고 |
|----------------------|--------------|-------------------------------|------|-----------------------------------------------|----|
| @@2리 농경지<br>진립로 개선공사 | 16,944       | ‘19.04.16.<br>~<br>’19.05.08. | **건설 | - 수로암거 1개소<br>- 석축찰쌓기 13.5m<br>- 콘크리트포장 17.4m |    |

2. 내 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97호)』 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9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

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에서는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확인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현장조건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288천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사 추진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조치할 사항

○○장은

[시정] ‘\*\*2리 농경지 진입로 개선공사’에 과다 지출된 금288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9 ]

## 정 선 군 시정

【제 목】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 ◇◇면

【조치기관】 ◇◇면

【조치사항】 세입 9,680원

【내 용】

### 1. 현 황

○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발생액: 금9,680원

(단위:원)

| 카드종류     | 연 도            | 포인트발생액<br>(세입금액) | 비고     |
|----------|----------------|------------------|--------|
| 신용카드 캐시백 | ~ 2020. 2월말 기준 | 9,680            | 원단위 절사 |

○ 신용카드 발급대장 : 없음

○ 현금영수증 사용대장 : 없음

○ 신용카드 연체료 발생액: 금2,463원

(단위:원)

| 연체료 발생일    | 연체이자  | 비고 |
|------------|-------|----|
| 합계         | 2,463 |    |
| 2019.02.28 | 89    |    |
| 2019.04.13 | 81    |    |
| 2019.08.13 | 275   |    |
| 2019.08.28 | 395   |    |
| 2019.10.15 | 998   |    |
| 2020.01.29 | 417   |    |
| 2020.02.28 | 208   |    |

## 2. 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1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고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 신용카드 사용시 의사결정(품의) ⇒ 신용카드 사용(원인행위) ⇒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 계좌 입금(지출)의 회계처리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다.
- 하지만 ○○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및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적립금 725,630원을 세입처리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카드금액 자동이체일 계좌잔고 부족으로 인해 4,713원의 연체이자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면장은

[시정] ①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적립금 9,680원을 세입조치하시고 ②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장을 작성하시고 ③연체이자(2,463원)을 카드사용통장에 입금하여 더 이상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10 ]

# 정 선 군

## 주의

【제 목】 시설공사 준공검사(감독) 업무 추진 소홀

【소관기관】 ◇◇면

【조치기관】 ◇◇면

【조치사항】 주의

【내 용】

### 1. 현황

| 구 분 | 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비고 |
|-----|-----|-------|-------|-------|----|
| 건 수 | 333 | 96    | 121   | 116   |    |

### 2. 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이수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

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면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설공사 1천 만원 이상 333건에 대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임명도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등 시설공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면장은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 정 선 군 주의

【제 목】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업무 부적정

【소관기관】 ◇◇면

【조치기관】 ◇◇면

【조치사항】 주의

【내 용】

### 1. 현 황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처리현황(2019~2020년도)

(단위: 가구,건)

| 신청대상자 |          |        | 민원대행 실적 |       |      |      | 비 고 |
|-------|----------|--------|---------|-------|------|------|-----|
| 계     | 사회보장급여신청 | 장애인 등록 | 계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전화요금 |     |
| 181   | 172      | 9      | 80      | 3     | 5    | 72   |     |

### 2. 내 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해당 기관(한전, KT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종 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읍면장은 사회 보장급여 신청서 접수를 받을 때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서”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하여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면에서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대상 181가구 중 113가구대하여 요금감면 민원 대행을 추진 하였으나, 68가구에 대한 민원대행 실적이 없어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할 사항

### ◇◇면장은

[주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접수 및 장애인 등록신청 접수시에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신청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12 ]

# 정 선 군

## 시정

【제 목】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관기관】 ◇◇면

【조치기관】 ◇◇면

【조치사항】 회수 227,000원

【내 용】

### 1. 현 황

[표] 공사 현황

| 사 업 명                   | 계약금액<br>(천원) | 공사기간                           | 계약자   | 사 업 량                         | 비고 |
|-------------------------|--------------|--------------------------------|-------|-------------------------------|----|
| 2018년 @@1리<br>진입로 확포장공사 | 11,300       | '18.06.01.<br>~<br>'18.06.20.. | (주)** | - 콘크리트포장 170㎡<br>- L형 옹벽 6.5m |    |

### 2. 내 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97호)』 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7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9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

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면에서는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확인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현장조건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227천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사추진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조치할 사항

◇◇면장은

[시정] ‘2018년 여량1리(가갯물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과다 지출된 금227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